

예산총칙

제1조 :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.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658,713,636	19,761,409
1. 일반회계	650,481,883	19,514,456
2. 특별회계	8,231,753	246,953
의료급여기금	981,528	29,446
주차장	6,793,777	203,813
주거환경개선사업	64,864	1,946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284,497	8,535
지하수관리	107,087	3,213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미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: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,169,616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